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통 보

제 목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부적정

기 관 명 ○○○○시

내 용

○○○○시에서는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어린이, 노인, 장애인의 경우 다른 연령층이나 비장애인에 비해 신체적,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완성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 [표]과 같이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.

[표]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호구역 현황

어린이 보호구역	노인 보호구역	장애인 보호구역
348	24	2

1.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 미지정 등 관리 부적정

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에 따르면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, 어린이 보호구역, 어린이보호구역, 노인보호구역, 장애인 보호구역의 범위가 인접 보호구역과의 거리가 200미터 이하 또는 중복될 경우는 [그림]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,

따라서 보호구역이 중복될 때 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지정·관리하면 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구역이 넓어져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보행안전이 개선될 수 있다.

그러나 ○○군 ○○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(2000년 지정)의 경우 자운영 유치원 어린이 보호구역(2008년 지정)과 100m 이내의 동일 도로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별도의 보호구역으로 지정·관리되고 있고, ○○ ○○초등학교와 ○○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위치가 동일함에도 별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·관리하는 등 [붙임]과 같이 비효율적으로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.

2. 보호구역 내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배정 부적정

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아니 되고 보호구역에 이미 노상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폐지하거나 어린이·노인 또는 장애인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다.

또한 「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」에 따르면 어린이의 교통사고 주요 유형으로 차 뒤에서 놀다가 나는 사고, 주·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다 나는 사고가 보호구역 내 주요 교통사고 요인이고, 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할 때 ○○○○시에서는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위험요소인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거나 이전해야 했다.

그러나 ○○○○시에서는 [사진]과 같이 ○○ ○○초교 등 총 6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 노상주차장이

설치되어 있고, 2011년 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정으로 노상주차장 폐쇄가 강행규정으로 변경된 지 약 7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철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어, 어린이, 노인, 장애인 등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다수 비장애인의 보행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.

3. 보호구역 내 주·정차 관리 부적정 등

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,

행정안전부 「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계획 및 추진지침」에 따르면 어린이의 돌발적인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보·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경우, 도로측면 유색포장 등 보행 공간 확보하고, 도로가 협소한 구간은 일방통행을 검토하여 보·차도 분리 하도록 되어 있고,

개선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「어린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」에 따라 차량감속유도시설, 무단횡단방지시설, 주·정차 금지시설 설치를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.

한편 ○○○○시 ○○에서 개선사업을 시행한 ‘○○반 영어어린이집’ 어린이 보호구역과 ○○ ‘○○ 경로당’ 노인보호구역 현장을 확인한 결과, 개선사업으로 도로 폭 협소 등의 이유로 보·차도를 분리하지 않고 도로측면 유색포장을 하여 보행 공간을 일부 확보하였으나,

불법 주차로 인해 어린이·노인 등이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 시 블라드, 불법 주정차 CCTV 등

주·정차 금지시설을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
그러지 않아 개선사업 이후에도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보행환경이 위협되는
결과를 초래하였다.

4.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미설치 등 부적정

「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」 제7조의
규정에 따르면 시장 등은 보호구역에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, 「어린
이·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」에 따르면 개선사업 시행 시 기존 보호구역
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보호구역에 들어갈 시설물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, 보호
구역별 고려하여야 할 시설은 아래와 같다.

<어린이 보호구역>	<노인 보호구역>	<장애인 보호구역>
차량감속 유도시설 ↓	차량감속 유도시설 ↓	차량감속 유도시설 ↓
무단횡단 방지시설 ↓	보·차 분리시설 ↓	보도의 편의성 증대 ↓
주·정차 금지시설	보도의 편의성 증대	장애인 안전시설

따라서 어린이·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보호구
역 내 필요한 도로부속물을 분석·설치하여 사고위험을 방지하고 도로교통 안전
을 확보하여야 한다.

그러나 ○○○○시에서는 ○○에 위치한 ‘○○○○ 유치원’ 어린이보호구역
과 ○○군 ‘○○재활원’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후 각각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
표지 및 장애인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노면표시만 하고 도로부속시설을 설치하고
있지 않아 보호구역 지정 취지와 다르게 보호구역을 운영하고 있다.

조치할 사항 ○○○○시장은

[통보] 보호구역 통합관리, 노상주차장 등 안전위험요소 제거 등 보호구역에
대한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